

춘천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가단34080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2,35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22. 7.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5, 16,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의 인도시까지 매월 금 8,3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춘천지사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9. 4. 별지 목록 기재 춘천시 E 대 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06. 10. 31.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F 대지 132㎡ 및 지상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5, 16,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 한 선내 ‘나’ 부분 대 5㎡는 피고 주택의 대지로 점유하고, 이 사건 토지 중 23㎡에 조립식 담장 및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하여 점유하다가 2022. 7. 4.경 위 조립식 담장 및 샌드위치 패널을 철거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는 28㎡에 관하여 2017. 9. 4.부터 2022. 6. 3.까지의 임료감정액은 2,312,040원이고, 2021. 9. 4.부터 2022. 6. 3.까지의 월임료감정액은 46,480원인바, 그 이후의 임료도 위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4.부터 2022. 7. 4.까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한 28㎡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2,358,520원(= 2,312,040원+ 46,480원1))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2. 7. 5.부터 피고의 주택이 이 사건 토지 중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5, 16,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 한 선내 ‘나’ 부분 5㎡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월 금 8,300원(= 46,480원×5/28)을 장래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주택 부지로 점유하는 28㎡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해주었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1) 2022. 6. 4.부터 2022. 7. 4.까지 임료 상당액은 2022. 6. 4.부터 2022. 7. 3.까지 임료 상당액 이상일 것으로 추인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6. 4.부터 2022. 7. 3.까지 임료 상당액과 같은 금액으로 인정한다.